「신중년 사회공헌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2026년 10월 6일
2. **제 출 자:** 구 미 시 장
3. **회부일자:** 2026년 10월 7일
4. **상정일자:** 2026년 10월 14일
 제30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 질의, 토론, 의결

Ⅱ. 제안 설명의 요지

1. 제안 설명자: 창업경제국장 김 영 철
2. 제안이유

가. 신중년 퇴직 전문인력을 비영리단체, 사회복지시설 등과 연결하여 사회공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관련 지역 네트워크와 인프라를 보유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운영의 질적 향상 제고

나. 사업의 기획·운영 및 수행에 필요한 지역 인적자원 네트워크를 확보, 고용·노동·경영 등의 민간의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활용하고

시간 및 비용 절감을 통한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 제16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 무 명 : 신중년 사회공헌사업 운영

나. 추진근거

1)「고용정책 기본법」 제25조

2)「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

3)「구미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제5조, 제15조

4)「구미시 사무위탁 조례」 제16조

다. 위탁사무

1) 참여기관 및 참여자 모집

2) 참여자 선정·사전교육, 참여자 이력·통계 관리

3) 참여자 참여수당·활동실비 지급

4) 참여기관과 참여자 연계 매칭 및 활동내역 관리

5) 그 외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활동 전반

라. 위탁기간 : 2027. 2. ~ 12.

마. 소요예산 : 200백만원

바. 위탁조건

1) 사회공헌활동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등을 갖춘 기관

(단,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기관은 제외)

가)「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자치단체 또는 중앙부처에서 지정한 예비 사회적기업

다)「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라)「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마) 행정기관

바)「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사)「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 지원단체 등 중앙행정기관 또는 자치단체에 등록 또는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단체(비영리법인·단체가 아닌 경우 제외)

아)「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사. 적정성 검토결과 : 적정 ※ 2024년 제3차 구미시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24.8.23.)

아.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후 수탁자 선정 심의

1) 선정방법 : 서류심사(1차) 후 민간위탁 선정 심의위원회 심사(2차)

2) 평가내용 : 사업계획, 사업수행능력, 전문성 종합 심사

구 분	평가항목(안)
사업수행기관 전문성 및 인력	■ 법인·단체현황(설립목적, 사업목표 등) ■ 최근 3년간 취업·일자리 창출 등 유사사업 수행경험 및 실적 ■ 운영인력의 역량 및 전문성(관련분야 경력자 등 적정 인력 구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 운영목표·비전·세부사업 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 참여자·참여기관의 모집·관리방안의 구체성 및 타당성 ■ 추진사업의 실현가능성 및 목표달성 가능성 ■ 예산의 타당성 및 집행계획의 효율성
지역사회 기여	■ 지역 내 일자리 유관기관·단체와의 협력·연계 가능성 ■ 지역경제의 수혜도 및 파급효과

자. 그 밖에 심의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 부서의견

가. 사업 특성상 다양한 자격요건의 참여자와 다양한 분야의 참여기관을 대상으로 추진하여야 함에 따라, 지역인적자원 네트워크와 노하우를 보유한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 전반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

나. 고용·노동·경영 등에 대한 민간의 전문지식 및 인프라 활용 시 사회서비스 확산의 지속성 및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고용정책 기본법」제25조

(2)「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4

(3)「구미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제5조, 제15조

(4)「구미시 사무위탁 조례」제16조

나. 예산조치 : 2027년도 예산편성

다. 성과평가 결과 및 감사 결과 : 안건 참조

Ⅲ. 검토보고의 요지 - 전문위원 임 호 규

○ 본 동의안은

- 퇴직 전문인력 활용 및 사회공헌 서비스 지원 사무의 전문성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민간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 검토 결과,

- 본 사업은 만 50세 이상 69세 미만의 경력과 전문지식을 가진 신중년 퇴직인력을 활용하여 지역 내 복지시설 및 비영리단체 등의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고, 참여자 및 참여기관을 체계적으로 모집·연계하는 사무임.
- 관련 지역 네트워크 및 인프라를 보유한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는 것이 사업 운영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실효성 있는 성과를 거두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연도별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참여 인원이 2024년 167명에서 2025년 132명, 2026년 9월 기준 73명으로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신중년 퇴직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 강화 및 신규 수요처 발굴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Ⅳ. 질의 및 답변요지: 생　　략

Ⅴ. 토　론　요　지: 생　　략

Ⅵ. 소수의견의 요지: 없　　음

Ⅶ. 심　사　결　과: 원안가결